

- 이 추록은 『2024 세법워크북』 제18판 1쇄 및 2쇄에 적용되는 수정사항입니다.
- 이 추록은 행정해석 및 그 밖의 보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

## 1.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출자비율의 계산방법에 대한 행정해석 반영

최근에 발표된 행정해석(사전-2023-법규법민-0747)에서는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, 출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이 행정해석의 내용을 교재에 다음과 같이 반영합니다.

❑ p. 법민-72 하 1행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세요.

한편 위 출자비율(출자주식수 ÷ 발행주식총수) 계산 시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한다. (사전-2023-법규법민-0747)

## 2. 상속세 일괄공제 설명 보완

❑ p. 상증-20 상 5행 ~ 9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해 주세요.

구 분	일괄공제 적용방법
① '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' 또는 '기한 후 신고'가 없는 경우	일괄공제 적용 →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액 적용 불가
② 배우자만 상속재산을 받은 경우	㉠ 단독상속(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) 일괄공제 적용 불가 →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액 적용
	㉡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또는 협의분할에 따라 배우자 혼자 상속받은 경우 일괄공제 선택 가능 → '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'과 '일괄공제액' 중 큰 금액 공제 가능

## 3. 그 밖의 보완사항

면	행	증전의 내용	고칠 내용
법인-238	하 3	VAT예수금 VAT예수금	VAT예수금 10 VAT예수금 10
소득-64	하 20	소유하고 주택과	소유하고 해당 주택과
소득-161	하 10	수강료는 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이며	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대상이며
소득-195	상 12	임대한 경우의	임대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의